

도시관리계획(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75호(1996.10.08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12호(2002.06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34호(2014.06.26.)로 결정고시된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』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(☎2241-2683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.

2025년 11월 13일
성 북 구 청 장

가. 변경 취지 :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에 의거 공동개발(지정)을 해제하는 사항임

나. 도시관리계획(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조서 : 공동개발(지정) 해제

구분	변경 전		변경 후		비 고
	위 치	면적(m ²)	위 치	면적(m ²)	
SR5	석관동 220-15	165	석관동 220-15	165	공동개발(지정) 해제
	석관동 220-32	188	석관동 220-32	188	공동개발(지정) 해제

※ 면적은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다.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(안)도

